《우주물체에 의하여 가해진 손실에 대한 국제적 책임에 관한 협약》의 제한성

로 금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은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공통적인 행동준칙입니다.》(《김일성전집》 제62권 352폐지)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공통적인 행동준칙인 법은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법에 따라 부여된 권리는 보호를 받으며 법적의무는 반드시리행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고 리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강제력에 의하여 담보되는 법적책임을 바로 규제하는것은 법을 정확히 준수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우주비행과 관련하여서도 국가들은 우주물체를 발사할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동시에 다른 국가나 공민에게 손해를 주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 만일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들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어떻게 얼마만큼 지니는가 하는것을 규제한것이다름아닌 우주물체의 책임과 관련한 국제법적제도이다.

우주물체의 책임과 관련한 국제법적제도를 옳게 수립하는것은 국가들이 우주물체를 발사하고 리용하며 회수하는 등 우주비행과 관련한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대의 안전 성을 보장하며 우주를 인류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서 국가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로부터 우주물체의 책임과 관련하 여 28개 조항으로 된 《우주물체에 의하여 가해진 손실에 대한 국제적책임에 관한 협약》 (책임협약)이 채택되였다.

그러나 책임협약은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일련의 제한성들을 가지고있다.

책임협약의 제한성은 첫째로, 손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제하지 못한것이다.

우주물체로 인하여 타국이나 공민에게 끼칠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는 것은 책임제도에서 선차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책임의 근거는 손해이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즉 손해가 있는가, 어떤 손해가 일어났는가에 따라책임의 유무와 형태가 규정되게 된다.

그러나 책임협약에서는 손해의 성격과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있다.

책임협약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손해의 성격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서만 규제하고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유인우주비행이 성공하고 우주려행과 인공위성의 다기능화 가 현실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우주려행자가 입은 피해, 우주려행자의 재산손해, 통신위성 이나 지구관측위성리용자가 입은 손해 등을 어떻게 보상하겠는가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있는 문제이다.

물론 책임협약이 체결될 당시의 기술발전수준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할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데 맞게 협약도 개선 완비되여야 한다.

책임협약에서는 발사국은 자기의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이나 혹은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실, 지구표면밖의 임의의 장소에서 타국의 우주물체나 그안에 있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끼친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이나 지구표면밖에 있는 타국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만을 고려한것이다. 다시말하여 우주물체발사국과 우주물체리용자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책임협약에서는 다음으로 손해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있는것이다.

우주조약 제7조에서는 우주물체를 발사한 국가는 그로 인하여 타국이나 그의 자연인, 법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책임협약은 그를 리행하기 위하여 《손해》에 대한 정의를 두고있다.

책임협약 제1조 1항에서는 《손해》란 《생명의 상실, 육체적손상 혹은 건강의 완전한 손상, 국가 혹은 법인 혹은 정부적국제기구들의 재산에 대한 파괴 혹은 파손을 의미한 다.》라고 규제하고있다.

책임협약에 따른 손해의 정의는 그 범위에서 매우 제한적인 규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선 정신적손해를 규제하지 않은것이다.

일반적으로 손해는 발생한 손해가 재산적성질을 띠는가 띠지 않는가에 따라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손해로 구분하며 비재산적손해는 인신적손해와 정신적손해를 포함한다.

그러나 책임협약에서는 재산적손해와 생명의 상실을 비롯한 인신적손해는 규제하였지만 정신적손해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례로 우주물체의 파편에 맞아 목숨을 잃거나 팔이 절단되고 또는 그로 인하여 파상풍에 감염되였다면 명백히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지상으로 떨어지는 우주물체의 쪼각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떨어지는 섬광을 보고 심장발작을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서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세계보건기구헌장에 의하면 건강이란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안녕을 의미한 다고 규제하고있다. 이에 따르면 책임협약에서 규제한 《건강의 완전한 손상》에 정신적손 해도 포함되는것으로 해석할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책임협약의 본문만으로는 명 백하지 않기때문에 진행하는 해석방법이다.

또한 간접손해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고있다.

손해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침해를 받은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분할수 있다. 직접손해는 불법행위가 직접 가해진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손 해를 말하고 간접손해는 당사자이외의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는 그것이 직접 작용한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일부 경우에는 제3자에 게도 손해를 발생시킬수 있다. 실례로 우주물체의 파편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로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그의 부양을 받던 자녀들이 생활원천을 잃게 되는 경우를 들수 있다. 이 경 우 마땅히 직접적인 피해자인 아버지의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비와 수입손실액뿐만아니라 제3자로서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 자녀들의 부양비도 보상받아야 한다.

물론 간접손해에 대한 책임문제는 개별적인 나라들의 민법들에서 서로 다르게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국내법체계가 다르다는 리유로 간접손해에 대하여 한 나라의 공민은 보상을 받고 다른 나라의 공민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완전하고도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협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된다.

책임협약에서는 다음으로 사후손해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고있다.

손해는 불법행위와 손해발생사이의 시간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즉시적인 손해와 사후 손해로 구분할수 있다. 즉시적인 손해란 불법행위의 수행 또는 완성과 동시에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며 사후손해란 불법행위가 완성된 후에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한다.

손해를 즉시적인 손해와 사후손해로 구분하는것은 가해자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량의 확정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우주물체들이 핵 및 원자력을 동력으로 리용하는 조 건에서 우주물체가 지상에 끼치는 손해는 즉시적인 손해뿐만아니라 방사능오염과 같은 사후손해도 포함하게 된다.

실례로 1978년 이전 쏘련의 핵원자로를 적재한 위성 《코스모스 954》호가 지구의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분해되여 그 잔해가 카나다의 북서부지역 그리트 슬레이브호수를 둘러싼 여러곳에 떨어졌다. 이 지역은 면적상으로는 오스트리아의 크기에 달하지만 인구가 밀집된 곳이 아닌것으로 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잔해로부터 방사능이 루출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추정되였다. 결국 즉시적인 손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손해가 있는것으로 하여 카나다는 1979년 1월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지만 책임협약상 손해의 정의의 제한성으로 하여 이 협약은 이전 쏘련과 카나다사이의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책임협약은 이외에도 손해의 발생원인을 우주물체에 한정시키고 그에 대한 정의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달이나 기타 천체의 표면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 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있다. 즉 우주물체로 되기 위한 조건을 우주에서의 비행을 위해 제작된 물체로 규제한데로부터 달에 설치된 시설에 의하여 입은 손해 또는 그 시설물에 서 개인이 초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손해의 성격과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결정하는데서 선결조건으로서 우주물체의 책임과 관련한 국제법적제도에서 기초적이며 출발적인 문제 로 된다.

따라서 책임협약을 비롯한 현존하는 우주관련조약들에서 발사국이 책임져야 할《손해》를 보다 폭넓고 정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책임협약의 제한성은 둘째로, 책임의 당사자와 형태, 원칙을 정확히 규제하지 못 한것이다.

책임은 불법행위를 감행한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지니는 법적의무의 표현으로서 법준수의 기본담보의 하나이다. 아무리 사소한 불법행위를 감행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한 책임을 정확히 부담시켜야 법을 정확히 준수집행해나갈수 있다.

특히 국제법은 준수담보로서의 강제력이 국내법에 비하여 미약한 조건에서 당사자들

이 국제조약은 반드시 준수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약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협약 역시 국가들이 우주관련국제법규범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국가나 공민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니는가 하는것을 규제함으로 써 우주의 개발 및 리용과 관련하여 국가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책임협약에서는 우주물체로 인한 책임과 관련한 실체법상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하지 못하고있다.

무엇보다먼저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당사자를 정확히 규제하지 못 하였다.

책임의 당사자는 우주물체의 책임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가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할수 있는가 또는 누가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책임협약에서는 발사국은 자기가 발사한 모든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발사》와 《발사국》에 대한 정의를 주는 방법으로 책임의 당사자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책임협약 제1조에서는 《발사란 술어는 발사의 시도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발사국》은 우주물체의 발사를 실현하거나 혹은 조직하는 국가, 우주물체의 발사가 그의 령토 혹은 장치에서 진행되고있는 국가라고 규제하였다.

협약에서는 발사란 단순히 발사의 시도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발사의 범위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발사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 가에 따라 보상책임의 당사자가 달라질수 있다.

책임협약상 우주물체로 인한 책임을 부과할수 있는 발사를 《발사한 후 대기권밖에 도달할 때까지》,《일정한 국가에 등록될 때까지》,《발사한 우주물체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발사한 우주물체를 회수할 때까지》 등으로 해석함에 따라 책임의 당사자가 달라지게 된다.

실례로 발사를 목적의 견지에서 우주에 도달할 때까지로 해석하는 경우 우주에서 비행중에 있는 물체로 인한 책임은 면제되게 되며 수명이 끝날 때까지로 보는 경우 수명이다된 우주잔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주활동은 우주물체를 발사한 때로부터 그것을 회수할 때까지 진행되며 우주물체로 인한 책임제도도 이 기간동안에 진행된 모든 우주활동에 적용되여야 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우주대국》들은 우주물체가 일단 발사되여 수명을 다한 다음에는 저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서 우주잔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어떻게 하나 발사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고있다.

우주를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데 복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주물체를 발사하는 국가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책임협약에 발사의 범위를 명백히 주어야 한다. 즉《발사란 발사한 우주물체를 회수할 때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할수 있다.

다음으로 우주물체로 인한 책임의 형태에 대하여 물질적책임에만 한정시키고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국제법규범을 위반하여 다른 나라에 손해를 준 국가는 국제법상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제34조에서는 손해에 대한 보상형식에 대하여 《국제불법행위가 조성하는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원상회복, 보상그리고 만족의 형식으로서 단독으로 혹은 병합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제하였다. 국가의불법행위의 성격과 엄중성정도에 따라 하나의 행위도 원상회복이나 보상을 포함한 물질 적책임과 함께 만족의 형식의 책임이 동시에 부과될수 있다.

실례로 우주물체의 파편쪼각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 물질적책임만을 추궁할수 있지만 우주물체를 리용하여 주권국가에 대한 정탐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적인 사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권국가의 위성을 고의적으로 요격소멸 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것이 현대국제법의 기본원 칙과 일반국제법규범에도 부합되는 책임추궁형태이다.

그러나 책임협약에서는 보상책임 다시말하여 물질적책임만을 규제하였을뿐 기타 다른 국제법적책임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우주조약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국가들은 자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만 규제하고 책임의 성격과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많은 학자들은 우주조약에서 규제한 책임이 법적책임인지 정치적책임인지 명백하지 않다는 견해들을 제기하고있다. 더우기 우주조약의 제6조와 제7조를 28개의 조문으로 구체화한 책임협약에서도 책임에 대한 정의를 주지 않고있는 조건에서 개별적인 나라들의국내법에 류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다음으로 책임협약에서는 우주활동의 성격에 맞지 않게 과실책임원칙을 규제하고있는것이다.

책임원칙을 바로 정하는것은 해당 활동이 내포하고있는 위험성정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평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즉 위험성이 매우 높은 활동을 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최대의 주의의무를 부여하여야만 있을수 있는 손해를 극력줄일수 있으며 예견하지 못하였던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할수 있다.

이로부터 핵시설이나 생화학공장, 가스시설 등과 같이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는 분야들에서는 무과실책임원칙(절대책임원칙)을 적용하는것이 국제관례로 되고있다. 행위 가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는것은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는것을 의미하는것 이 아니라 발생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여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회복할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무과실책임원칙은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여도 즉 가해자에게 허물이 없다고 하여도 그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주활동은 높은 과학기술을 요구하는것과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수자에 달하며 인류전반의 환경에 후과를 미치게 되는것으로서 우주물체책임제도에서는 마땅히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협약에서는 우주물체로 인한 지상손해에 대하여서는 무과실책임원칙을 부여하면서도 타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과실책임을 적용하도록 규제하 고있다. 책임협약의 제한성은 셋째로, 손해보상청구절차가 형식적으로 규제되여있다는것이다. 손해보상청구와 관련한 절차문제는 우주물체로 인한 책임제도가 실지 리행될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주물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어떤 절차를 통하여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규제하고 그것 이 실제로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우주물체의 발사와 리용에서 국가들이 자기 의 책임을 다하도록 국제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그러나 책임협약에서는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절차규칙을 매우 형식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책임협약에서는 우선 우주물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이 발사국의 국내재판소나 행정기관들에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책임협약 제11조 1항에서는 피해자가 발사국에서 국내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 제적으로 청구를 할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2항에서는 개별적인 피해자들이 발사국의 재판소나 행정기관들에 청구를 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결국 일반국제법상 통용되고있는 외교적보호권을 인정한것인지 아니면 부정한것인지 애매하게 규제하고있다.

일반국제법상 외교적보호는 국가가 다른 나라에 있는 자기 나라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보호하는 행위이다. 국제법상 외교적보호권이 행사되려면 다른 나라에 있는 자기 나라 공민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가 명백히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여야 하며 침해당한 공민이 주재국에서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외교적보호는 주재국과 국적국가사이에 적용되는것으로서 주로 주재국이 해당 공민에게 국제법상 인정된 외국인대우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것과 관련된다.

우주물체로 인하여 타국공민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도 물론 발사국의 국제법상위반이 존재하지만 그 공민은 발사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것이 아니라 본국이나 제3국에 주재 하고있다.

책임협약 제7조에서도 이 협약은 발사국의 공민들이나 발사지역에 있는 외국공민들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결국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보상청구는 발사국과 피해국사이 또는 발사국과 국적국사 이에 이루어지는것으로서 주재국과 국적국의 관계에 적용되는 외교적보호권이 그대로 인 용되여야 한다는 리론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책임협약에서 피해자가 발사국의 재판소나 행정기판에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가 발사국의 국내법체계에서 시작된 경우 국가가 국제법상절차를 리용할수 없도록 규제한것은 일반국제법상 외교적보호에 대한 모방으로서 매우 형식적이라는 비난 을 받고있다.

발사국은 어디까지나 가해자이며 이러한 가해국재판소나 행정기관에 청구를 제기한 다는것은 아무러한 의미도 없는것이며 결국 이러한 조항은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일종의 방해를 조성하게 된다.

책임협약에서는 국가들사이에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손해보상청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청구위원회를 통한 청구절차에 대하여 규제하고있지만 그마저도 실질적인 대책으로 는 될수 없다. 협약에서는 제14조로부터 제20조까지 7개 조항에 걸쳐 청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절 차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청구위원회의 최종결론에 대하여 쌍방간의 합의가 없 는 한 아무리한 법적구속력도 없는 권고적성격만을 부여하였다. 결국 청구위원회가 조직 되여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해당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여도 그것이 실지로 집행된다는 그 어떤 법적담보도 없다. 책임협약이 채택발효되여 현재까지 많은 우주사고가 발생하고 그 로 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청구위원회를 통하여 사건이 해결된 실례가 단 한 번도 없다는것은 이러한 절차가 매우 형식적이고 무의미하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책임협약에 청구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강제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조건에서 설사 청구위원회의 최종적이면서도 구속력있는 결정이 있다고 하여도 손해에 대한 보상은 발사국의 《성의》에 맡길수밖에 없다.

이처럼 책임협약은 책임의 당사자로부터 손해의 성격과 범위, 그로 인한 손해보상청 구절차 등에서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책임협약이 가지고있는 제한성은 우주관련조약을 작성채택하면서 어떻게 하나 책임의 도수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을 비롯한 《우주대국》들의 고의적인 책동의 산물로서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국제법적문제이다.

실마리어 우주물체, 손실, 국제적책임